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안정화 효과분석*

홍 경 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

1. 서 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주된 소득원은 시장이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원이 시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을 이전받는다. 이들에게 가족은 중요한 소득원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할 경우 개인은 사회보장급여를 받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소득을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 사회 일수록 개인의 전체 소득액 중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사회보장 급여는 국가에 의해 공여되므로 이러한 소득의 소득원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소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확대된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 이전소득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는 공적 이전소득보다 더 크며,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상당하다. 사적 이전소득의 소득원이 확대된 가족, 친척, 이웃 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득의 소득원을 '공동체'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이 가족·국가·공동체라는 소득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의 안정성은 빈곤완화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개인이나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탈상품화' 정도(Esping-Andersen, 1990)란 결국 어떤 사람이 실직,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배제된다 할지라도, 그가 누리던 생활수준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에서 초점을 두는 사회적 위험의 분산은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소득의 안정화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 당연히 그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소득원에서 창출되는 소득들이 소득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들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은 여러 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다(홍경준, 1999; 손병돈, 1999). 우선, 1961년 이후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결

* 이 발표논문은 성균관대학교 2002학년도 성균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정 구조가 유지되어 왔으며, 정책 결정자들은 그 구조를 통한 정치적 학습에 제약되어 왔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고 사회복지률을 동한시하는 정책결정 구조와 그를 당연시하는 정책 결정자들 때문에 주요한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늦어졌고 그 결과로 오늘날 국가복지가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결정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를 일정 수준 해결해 왔던 비공식적 연줄망이 한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있다. 가족과 친척, 이웃과 같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연복지(緣福祉)가 일정 정도 국가복지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는 점이 한국의 국가복지가 낙후된 또 다른 이유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 및 확대가족이나 친척, 이웃과 같은 공동체가 개인 소득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양상과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연복지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분석의 방법

1) 사용자료

소득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소득을 일정 주기로 추적 조사한 패널 자료(panel data)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1998년부터 시행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5,000개의 가구 표본과 그에 속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년 1회 노동시장활동 및 소득,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적 조사이다(방하남 외, 1999). 1차년도 조사자료(1998년 자료)의 경우, 이전소득의 소득원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활용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차년도(1999년 자료)부터 4차년도(2001년 자료)까지의 3년 기간 동안의 자료가 활용된다. 각각의 자료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정보는 전년도의 것이므로, 실제 이 연구에서 분석되는 소득의 안정성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소득을 통해 측정된 것이다.

2) 표본의 유형화

분석의 초점인 소득의 안정성이 1년 주기로 파악된 3개년 간의 소득원별 소득을 통해 측정되기 때문에,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3개년 패널에 걸쳐 소득정보가 모두 갖추어진 가구원 개인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개인은 가구 내에서의 지위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한정되며, 연령과 성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먼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0세 이상의 집단과 60세 미만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는 60세 미만의 집단을 성별에 따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 집단은 2차년도 자료의 배우자 유무 정보에 따라 배우자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유무와 같은 결혼지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일부의 표본들에서 그러한 변화가 발생했다. 따라서 분석과정에서는 2차년도 이

후에 결혼지위상의 변화가 발생한 표본들이 제외되었다. 그 결과로 ①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 표본 ②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 표본 ③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 표본 ④ 60세 이상 집단표본이 추출되었다.

가구 내에서의 지위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2차 년도부터 4차 년도까지의 소득 정보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결혼지위의 변화가 없는¹⁾ 가구원 개인 표본의 수는 2,778개로 이 중 60세 이상 집단이 9.3%,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이 52.5%,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이 34.9%,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 3.3%를 차지한다.²⁾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60세 이상			60세 이상 집단
60세 미만	남성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
	여성	배우자 있는 여성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
		배우자 없는 여성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

〈그림 1〉 표본의 유형화

표본을 이런 식으로 유형화한 것은 연령과 성별, 배우자의 유무로 구분되는 인구집단에 따라 가족·국가·공동체라는 소득원이 소득의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안정성의 확보가 덜 용이할 것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더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 안정성은 가구 내의 다른 가구원이 획득한 근로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혹은 연금 등과 같은 공적 이전이나 자녀,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 이전을 통해 증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안정성의 확보 정도는 성별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려모로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노동시장진입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차별을 당하기 쉽다. 노동시장을 통해 소득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의 이런 어려움은 결혼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³⁾ 배우자가 획득한 근로소득의 가구 내 재분배는 여성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는 유력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여성과 배우자 없는 여성 비교해 보면, 가족을 소득원으로 하는 소득의 안정성 정도가 차이 날 가능성이 높다.

1) 가구 내에서의 지위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로 2차 년도부터 4차 년도까지의 소득 정도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표본의 수는 모두 2,836개였다. 이 중 3년 동안 결혼지위의 변화가 발생한 표본의 수는 58개였다.

2)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에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의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가중치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모두 1차년도 조사자료(1998년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중치로 가중화한 수치이다.

3) 가령,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은 이탈리아의 빈곤계층에서 여성의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이유를 높은 결혼율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3) 분석의 내용 및 절차

(1) 소득안정성의 측정

분석의 초점이 되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은 개인 소득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⁴⁾로 측정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특정 주기(주, 월, 년 등)로 획득하는 소득들의 변이계수를 구하여 소득의 안정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의 안정성이 높다 하면 개인 소득의 변이계수는 작을 것이며, 소득의 안정성이 낮다면 역으로 개인 소득의 변이계수는 클 것이다. 가령,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은 다음의 식 (1)을 통해 측정된다.

$$(1) CV_{earned \ income} = \frac{sd(earned \ income)}{mean(earned \ income)}$$

한편, 이 연구에서 개인소득의 안정성은 개인 근로소득부터 공적이전후 소득까지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파악된다. 여기에서 활용하는 소득의 구성요소들은 년 단위로 측정한 것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질소득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 근로소득: 분석 대상이 되는 개인이 전년도에 그의 주된 일자리를 통해 획득한 임금, 혹은 비임금 근로소득을 말한다.

② 가구 근로소득: 분석 대상이 되는 개인과 그가 소속된 가구의 다른 가구원이 전년도에 그의 주된 일자리를 통해 획득한 임금, 혹은 비임금 근로소득을 포함한다.

③ 가구 소득: 가구가 획득한 가구 근로소득에 가구의 전년도 재산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을 더한 것을 말한다.

④ 사적이전후 소득: 가구 소득에 가구가 전년도에 취득한 사적 이전소득(친척과 친지의 보조금, 사회단체의 보조금, 기타 보조금 등)을 더한 것을 말한다.

⑤ 공적이전후 소득: 가구의 사적이전후 소득에 가구가 전년도에 취득한 공적 이전소득(정부 보조금, 사회보험급여)을 더한 것을 말한다.

(2) 개인의 지위에 따른 소득원별 소득 안정성의 변화

소득원별 소득 안정성 정도는 개인의 연령과 성별, 배우자의 유무와 같은 개인의 인적지위에 따라

4) 소득의 변이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즉 다양한 크기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변이계수를 구하여 그것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소득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 사람이 다양한 시점에서 획득한 소득의 변이계수를 구한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령, 가구 내에서 가구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득 재분배를 고려하면 배우자 없는 여성과 배우자 있는 여성의 소득원별 소득 안정성 정도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배우자 없는 여성은 배우자로부터 이전받는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소득안정성에 대한 가족의 역할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비교해서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개인의 지위에 따라 소득원별 소득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여기에서 분석될 것이다.

또한, 소득원별 소득 안정성 정도는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지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나 공동체를 통한 소득안정화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처지에 놓여있는 개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사사분위 집단에 초점을 두고, 이들 저소득 계층에서 소득원별 소득 안정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3) 소득원별 소득 안정화 효과의 비교

개인의 지위에 따라 소득원별 소득의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후에는 가족·국가·공동체라는 각각의 소득원이 소득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소득 안정성의 측정지표인 변이계수의 분해가 필요하다. i 집단에서 시장을 소득원으로 하는 소득의 변이계수 평균값을 CV_i^m 이라 하고, 시장소득에 국가를 소득원으로 하는 소득을 더한 총소득의 변이계수 평균값을 CV_i' 라고 한다면, 국가라는 소득원이 소득 안정성에 미친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즉,

$$(2) \Delta CV_i = CV_i' - CV_i^m$$

$$(3) effect = \left(\frac{\Delta CV_i}{CV_i^m} \right) \times 100$$

3. 분석의 결과

I) 소득 구성요소별 소득안정성의 변화

이제 변이계수의 평균값으로 측정된 소득의 안정성이 각각의 소득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각 집단에서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검토해보자. <표 1>은 네 인구집단의 소득 구성요소별 소득안정성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①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은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들은 1998년에서 2000년까지의 3년간 평균 근로소득액에서 아래위로 48.36% 정도의 근로소득액 변동

을 경험했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도 배우자 있는 여성이나 60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다. 이들은 57.00% 정도의 근로소득액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에 비해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이나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심각한 정도의 소득 불안정성이 노출되어 있다. 배우자 있는 여성은 3년간 평균 근로소득액에서 아래위로 86.62% 정도의 변화를, 60세 이상의 노인은 92.47% 정도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즉,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3년간 평균 근로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적을 때는 7.53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반면, 많을 때는 192.47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을 정도로 소득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이다.

〈표 1〉 소득 안정성(변이계수)의 변화 ; 1998~2000

소득의 구성요소	인구집단	사례수	변이계수의 평균값
개인근로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99	0.5700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83	0.8662
	남성(60세 미만)	1468	0.4836
	60세 이상	228	0.9247
가구근로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99	0.3575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83	0.3129
	남성(60세 미만)	1468	0.3075
	60세 이상	228	0.5440
가구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99	0.3342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83	0.3130
	남성(60세 미만)	1468	0.3131
	60세 이상	228	0.5035
사적이전후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99	0.3087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83	0.3098
	남성(60세 미만)	1468	0.3131
	60세 이상	228	0.4433
공적이전후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99	0.3022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983	0.3059
	남성(60세 미만)	1468	0.3113
	60세 이상	228	0.4288

자료: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가중치로 가중화함.

배우자 있는 여성의 경우,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낮은 것은 주로 두 가지의 이유와 관련된다. 우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가구의 생계를 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 즉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남성 집단의 그것보다 낮다는

점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된다. 하지만,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과 비교할 경우에도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근로소득 안정성은 확연히 낮은데, 이는 또 다른 이유, 즉 이들이 가구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을뿐더러, 남성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의 적극적 참여가 떨어진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소득 불안정성이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통해 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보다 심각한 것은 60세 이상 노인집단에서의 소득 불안정성이다.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높은데, 빈곤계층의 경우에선 부유층⁵⁾처럼 한 기간의 소득하락이 다음 기간의 소득상승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② 가구 근로소득의 안정성

가구 근로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가구 근로소득의 안정성과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가구 내에서 재분배될 때 나타나는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효과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에 가구 구성의 안정성이 기여하는 바를 의미한다. 그 점에 주목하면서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변이계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소득 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들은 3년간 평균 가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위로 23.64% 정도의 소득변동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들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0.2611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소득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가구원이 획득한 근로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 집단은 기대한 대로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이었다. 이들의 가구 근로소득 안정성은 3년간 평균 가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위로 24.97% 변화하였다. 이 집단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은 0.8364로 극히 낮았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이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집단과 뚜렷이 비교되는 집단이 바로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의 가구 근로소득 변이계수의 중앙값은 0.2928로, 개인 근로소득 변이계수의 중앙값 0.2927보다 더 크다. 이는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소득안정성을 더 낮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60세 미만의 여성 집단에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소득의 안정성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성의 소득안정성에 배우자의 근로소득, 더 나아가 가구구성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도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집단은 3년간 평균 가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위로 42.09% 변화하는데, 개인 근로소득의 변이계수 중앙값 0.8849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이다.

③ 가구 소득의 안정성

가구 소득은 가구가 획득한 가구 근로소득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의 재산소득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재산소득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

5) 일반적으로 소득의 안정성도 부유층이 빈곤계층보다 높다. 소득계층별로 소득의 안정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분석대상의 4분위 소득계층별 소득안정성을 측정해본 결과 개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이 가장 많은 일사분위 집단의 변이계수 평균값은 0.1936, 이사분위 집단은 0.2292, 삼사분위 집단은 0.3575, 사사분위 집단은 1.7321로 나타났다.

구 소득의 안정성은 가구 근로소득의 그것에 비해 더 낮을 것이다. 분석결과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과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에서 가구 소득의 안정성은 가구 근로소득의 안정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가구 소득 안정성은 0.3131로 가구 근로소득의 0.3075보다 낮았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가구 소득 안정성 또한 가구 근로소득의 안정성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는 재산소득이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

사적이전 후 소득은 가구 소득에 친척과 친지, 사회단체 등이 제공한 이전소득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과 가구 소득의 안정성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소득 안정성에 대한 공동체의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값으로 측정한 경우 사적 이전소득은 대체로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가령, 가구 소득의 안정성과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을 비교해 보면,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의 소득안정성은 0.3130에서 0.3098로 변화하여 소득의 안정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값으로 측정할 경우에 소득의 안정성이 극히 낮은 개인들(극단치)의 영향이 민감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본다면, 가구 소득의 안정성이 극히 낮은 개인들이 사적 이전소득을 통해 소득안정성을 더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의 안정성이 낮은 개인들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한데, 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⑤ 공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

공적이전 후 소득은 사적이전 후 소득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급여와 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것이다. 공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을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과 비교해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알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공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은 사적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보다 더 높다. 즉, 모든 집단에서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은 공적이전 후 평균소득액의 아래위로 30.22%의 소득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사적이전 후 소득의 30.87%의 변동폭보다는 적은 것이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이나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도 공적이전 후 소득의 변동폭은 30.22%~42.88% 사이에 있어 사적이전 후 소득의 변동폭 30.87%~44.33%보다 적다.

2) 소득원별 소득안정화 효과

이제 앞의 식 (3)을 적용하여 소득안정성의 변화율을 살펴보자. 각각의 소득구성요소는 시장·가족·국가·공동체라는 소득원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이 순차적으로 더해지는 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를 분해하여 소득안정성의 변화율을 구하면, 각각의 소득원이 가지는 소득안정화 효과를 구할 수 있다. <표 2>는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안정성의 변화율을 구한 것이다.

〈표 2〉 소득구성요소의 추가에 따른 소득안정성의 변화율: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가구소득 - 개인 근로소득	사적이전 후 소득 - 가구 소득	공적이전 후 소득 - 사적이전 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41.37	-7.63	-2.11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63.86	-1.02	-1.26
남성(60세 미만)	-35.26	0.00	-0.57
60세 이상	-45.54	-11.96	-3.27

자료 :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기준
치로 가중화함.

주 : 〈표 1〉의 분석결과를 통해 계산함.

먼저 '가구 소득 - 개인 근로소득'의 변화율은 가구 소득의 변이계수 평균값에서 개인 근로소득의 변이계수 평균값을 뺀 값이 개인 근로소득의 변이계수 평균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값은 가구 내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발생한 변이계수 평균값의 변화 정도를 말하며, 결국 가족이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사적이전 후 소득 - 가구 소득'의 변화율은 공동체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나타내며, '공적이전 후 소득-사적이전 후 소득'은 국가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가족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다른 소득원에 비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가구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의 재분배는 소득의 안정성이 낮은 가구원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의 경우 가족은 개인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을 63.86% 줄인다. 반면에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은 가족을 통해 개인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을 41.37% 줄이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60세 미만의 남성은 가구의 생계를 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주 소득자인 관계로, 가구 내의 재분배를 통한 소득 안정성의 변화 정도는 네 개의 집단 중 가장 적다.

가족의 소득 안정화 효과에 비하면 공동체나 국가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매우 작다. 하지만, 공동체나 국가라는 소득원은 시장이나 가족을 통해 소득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득안정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공동체라는 소득원은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제공받은 사적 이전소득을 통해 가구 소득의 불안정성을 7.63% 줄일 수 있다. 공동체의 효과가 특히 크게 나타나는 집단은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이다.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은 공동체를 통해 가구 소득의 불안정성을 11.96% 줄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이나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에서 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국가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인구 집단별로 보면 가족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에서 가장 크며, 공동체와 국가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저소득계층의 소득원별 소득안정성

저소득계층에서는 소득 구성요소별로 소득의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며, 각 소득원들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저소득계층은 1998년~2000년의 3개년 간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5%의 표본으로 정의했다.

〈표 3〉 저소득계층의 소득 안정성(변이계수) 분포 ; 1998~2000

소득의 구성요소	인구집단	평균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사사분위집단	
		사례수	변이계수의 평균값
개인 근로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	1.2806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395	1.4170
	남성(60세 미만)	133	1.3987
	60세 이상	137	1.1724
가구 근로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	0.5773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395	0.3878
	남성(60세 미만)	133	0.5814
	60세 이상	137	0.6428
가구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	0.4923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395	0.3809
	남성(60세 미만)	133	0.5512
	60세 이상	137	0.5968
사적이전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	0.4124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395	0.3709
	남성(60세 미만)	133	0.5383
	60세 이상	137	0.4988
공적이전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31	0.3976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395	0.3630
	남성(60세 미만)	133	0.5243
	60세 이상	137	0.4859

자료: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학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기중치로 가중화함.

〈표 3〉의 분석 결과를 앞의 〈표 1〉과 비교해 보면, 모든 소득구성요소에서 소득의 안정성이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을 통해 획득하는 개인 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은 전체 표본의 그것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안정성이 낮은 주된 이유가 바로 시장 소득의 불안정성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안정성이 위낙 낮기 때문에, 가족·국가·공동체라는 다른 소득원이 추가되더라도 이들의 소득 불안정성은 충분히 상

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근로소득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앞의 <표 1>의 분석에서는 이들의 근로소득 안정성이 가장 높았지만, 여기에서는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보다도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의 이들의 높은 소득 불안정성은 공동체나 국가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이 집단에서 특히 미미하다는 점과 결합하여, 공적이전 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도 가장 낮은 소득안정성을 가지도록 한다.

한편, 소득구성요소들을 순차적으로 분해하여 소득안정성의 변화율을 구해 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서 각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 가족이라는 소득원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과, 시장이나 가족을 통해 소득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 공동체와 국가라는 소득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표 2>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에 초점을 둔 <표 4>의 분석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동체나 국가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전체 표본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물론, 가족의 소득안정화 효과도 더 커졌지만, 그 정도는 공동체나 국가에 비해 덜하다. 결국, 저소득 계층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에는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던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도 공동체를 통해 소득의 불안정성을 약 2.33%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가 주로 저소득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앞에서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인구집단별로 각 소득원의 소득 안정화 효과를 비교해보면, 가족은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반면, 공동체는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에서, 국가는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소득구성요소의 추가에 따른 저소득 계층 소득안정성의 변화율: 변이계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사사분위 집단			
	가구 소득 - 개인 근로소득	사적이전 후 소득 - 가구 소득	공적이전 후 소득 - 사적이전 후 소득
배우자 없는 여성(60세 미만)	-61.56	-16.23	-3.59
배우자 있는 여성(60세 미만)	-73.12	-2.61	-2.14
남성(60세 미만)	-60.59	-2.33	-2.61
60세 이상	-49.10	-16.42	-2.58

자료: 한국노동패널 2, 3, 4차 조사자료. 표본의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한국노동패널 1998의 가중치로 가중화함.

주 : <표 3>의 분석결과를 통해 계산함.

4. 결론 및 함의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득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네 개의 인구집단별로 개인의 소득 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각의 소득구성요소가 소득원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이 순차적으로 더해지는 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가족·국가·공동체라는 소득원이 가지는 소득안정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근로소득 안정성은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 집단이 60세 미만의 여성 집단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60세 미만 여성 집단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여성 지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60세 미만의 여성 집단 내부에서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에 큰 차이가 있고, 배우자 있는 여성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더 낮다는 점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못지않게, 노동시장 참여 의지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배우자 있는 여성의 경우, 남성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은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가족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를 통한 소득 안정화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소득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가구원, 특히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개인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매우 낮았던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은 가구 근로소득 안정성이나 가구 소득 안정성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있다. 반면에 다른 가구원을 통한 가구 내의 소득재분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이나 노인 집단은 가구 근로소득 안정성이나 가구 소득의 안정성이 다른 두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적 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결과, 사적 이전 후 소득은 소득의 불안정성이 큰 저소득 계층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표본의 경우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이나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은 사적 이전을 통해 소득 안정성을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저소득 계층만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전이 소득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넷째, 공적 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은 저소득 계층만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에 좀 더 높아지지만, 전체 표본에서도 높아졌다. 즉, 모든 집단에서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60세 미만의 남성 집단이나 60세 미만의 배우자 있는 여성 집단도 공적 이전 후 소득의 안정성은 사적 이전 후 소득 안정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적 이전이 사적 이전에 비해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사회보험 급여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가족·국가·공동체는 모두 개인의 소득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가족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다른 소득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가족의 역할과 비교하면 공동체나 국가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작은 편이다. 특히 국가의 소득 안정화 효과는 공동체의 효과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대단히 미흡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나 공동체는 시장이나 가족이라는 소득원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집단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6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집단과 60세 이상의 노인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을 뿐더러, 가구 구성의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나 가족이라는 소득원을 통해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나 공동체는 이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원천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소득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시장과 가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소득 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이유는 이들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 60세 미만 남성 집단의 소득 안정성이 다른 집단보다 낮으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이들의 개인 근로소득 안정성이 낮다는 데에 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1차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소득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 빈곤계층에 대한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구 구성의 안정성 또한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구 구성의 안정성을 강화하거나 가구 구성의 취약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보다 효과적인 소득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약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성이 높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체나 국가의 중요성은 이 시점에서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약화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다면, 소득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에 의지할 필요성이 더더욱 커진다.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고 그 급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할 필연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소득 안정성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시장이나 가족, 공동체라는 소득원을 통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 점차로 험해지는 현실에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는 이쯤에서 훤힌 뚜렷해진다.

참고문헌

- 방하남·안주엽·장지연·박은경·호정화·정혜원. 1999.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손병돈. 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9호, pp. 157~179.
- 홍경준. 1999. 『한국의 사회복지체계 연구: 국가·시장·공동체의 결합구조』, 나남출판사.
- Casper, L., McLanahan, S., & I. Garfinkel. 1994.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8, pp. 594-605.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cy Press.